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8
----------	-----

2024. 4. 30.(화)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종갑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4년 4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11일
- 라. 상정일자 : 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갑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충청북도 내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자문, 산업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등 도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필요성)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함

나. (타당성)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보호의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최근 산업기술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됨

다. (법적합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기술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바.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기술

2. “산업기술보호”란 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에 관한 유출·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충청북도에 소재를 두고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기술보호 환경, 취약요인, 침해 현황 등 현실태
3.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기반구축
4.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침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 등의 지원
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6. 산업기술보호 홍보 및 교육
7. 산업기술보호 관계 기관 협력
8.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기술보호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과 산업기술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수준 및 역량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인력 및 관리 현황
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보호 유출·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관련 정보 수집·분석 지원
2. 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진단 및 상담·자문
3.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안내 및 법무 상담 지원
4. 산업기술보호 교육 및 홍보
5. 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정부기관, 수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
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
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생략)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 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전략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략)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산업기술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산업기술보호 교육 및 홍보 등 도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 조례안 제6조(산업기술보호 및 지원사업 등)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산업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
- 추 계 기 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결과: 4억원

- 교육운영비(방문교육, 보안컨설팅 등) 2,000천원 × 20개사 = 40,000천원
-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사업운영비(홍보비, 회의비 등) 1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교육운영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보안 실태조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사업운영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